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유급 휴업/휴직)(예시)

구 분	내 용
1. 고용유지조치(유급 휴업 / 휴직) 실시 사유	예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매출이 15% 이상 감소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함.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휴업/휴직을 실시한다. (휴업이나 휴직 둘 중에 하나를 명시)
2. 고용유지조치(유급 휴업 / 휴직) 실시 기간	예시) 2020년 3월 16일(월) ~ 3월 27일(금) (휴업) (휴직의 경우, 최소 한 달 이상 신청해야 하므로 '3.16. ~ 4.15.'처럼 한 달 단위로 신청해야 함/한 달 넘게 신청하면 3.16. ~ 6.30.(예시) 기간 작성 후 계획서의 개별 근로자 휴직기간에는 한 달 단위로 작성함)
3. 고용유지조치(유급 휴업 / 휴직) 방법	예시1) 팀별로 팀 사정에 맞게 조정하여 휴업한다. 예시2) 전직원 하루 8시간 -> 6시간 근무시간 조정 예시3) 직원들을 고용유지조치 전체기간에 대해 휴업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근로자 개별로 명시해야함.
4. 고용유지조치(유급 휴업/휴직) 실시 후 인력 활용 방안	예시) 고용유지조치 실시 후 전원 복직한다. ※고용유지조치가 끝난 후 1달 이상 해고하지 않고 고용해야함.
5. 고용유지조치(유급 휴업 / 휴직) 대상자명단	예시1) 홍길동, 임격정, 장길산 총 3명 예시2) 총 27명(명단 첨부) ※임의양식 or 15~16페이지에 명단 작성
6. 휴업(휴직)기간의 임금 (휴업(휴직)수당) 지급 기준	예시1)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로 지급한다. 예시2) 휴업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한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를 찾아본 뒤 사업장에 부담을 적게 줄 수 있는 것으로 신청하면 됨

※ 휴업수당 지급 사항에 기재내용에 따라 휴업지원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된 휴업수당이 지급기준에 미달될 경우 지원이 보류되며, 기재누락된 부분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노사협의회 회의록(예시)

회의일시	2020. 3.3. (화요일)	참석자	홍길동, 임꺽정, 장길산, 장도훈, 김장미, 김춘배, 한보미
회의장소	본사 1회의실		
협의사항	회사 경영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자 휴업에 관하여 협의한다.		
의결사항	1. 고용유지조치 방법 및 기간 2. 휴업/휴직기간 임금 지급 수준 3.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4. 고용유지조치 실시 후 인력 활용 방법		
의결된 사항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예시) 1. 고용유지조치 기간(3.16.~3.27.) 동안 유급휴업 실시 2. 고용유지조치 후 전원 복직 3. 휴업 수당은 평균임금의 70%(예시)로 지급함		
기타 참고사항			

사업주(대표자)확 인 : [법인의 경우 법인 도장 필수](인)

근로자 대표 확 인 : (인)

근로자 대표 선임장(예시)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직 급	확 인(서 명)
한보미(예시)	1990. 8. 27.	경영지원1팀	대리	※본인 자필 서명 필수

상기인을 ()회사 근로자측 대표로 선임하여 휴업, 휴직, 근로시간단축, 훈련
노사협약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직 급	확 인(서 명)
김춘배(예시)	1995. 8. 17.	경영지원3팀	사원	※본인 자필 서명 필수

년 월 일

※ 전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하여야 하며 가능한 휴업·휴직·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들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매출액 대비표(예시)

-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서 감소율이 15%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3호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인정되며,
- 본 자료는 시행령 제24조 제8호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 판단 시 활용되오니,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준월: 휴업조치 시행일이 속한 달의 직전 월(예: 2020.3.8. 휴업 시작 시, 기준월은 2020.2월)
- ※ 셋 중에 하나만 15%이상 감소해도 가능함. 하나만 작성해도 됨.

○ 기준월의 직전연도 같은 월 대비로 산정했을 경우(예시)

기준월의 직전 연도 같은 월 매출액	기준월(2월) 매출액	감소율
123,123,123,123	95,123,123,123	약 22.74%

○ 기준월의 직전 3개월 월평균 대비로 산정했을 경우 (예시)

기준월 직전 3개월				기준월 (2월)	감소율
(11)월	(12)월	(1)월	직전 3개월 평균매출액		
12,877,558,894	87,851,694,514	5,851,489,541	102,679,749,922	95,123,123,123	약 7.35%

○ 기준월의 직전년도 월평균 대비로 산정했을 경우(위 항목 참고해서 작성)

월별 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월평균
'19년														
'20년														
감소율	_____ %													

위 매출액 대비표는 사실대로 기재하였고, 만일 이에 허위기재사항이 있을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24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및 31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에 의거 지원금이 부지급, 지급제한 또는 환수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사업장명 : (인)

※ 위의 3가지 산정 중 선택해서 작성

- 위 매출액 대비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서류(세금계산서, 부가세 신고자료, 매출액 원장,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를 제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관련 유의사항 안내문

- 귀 사업장에서 제출하신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의해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등)를 실시하고 휴업의 경우 월 근로시간 단축율이 20%를 초과, 휴직의 경우 1개월 이상 실시하는 등 고용보협법시행령 제19조부터 제21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에 열거하는 항목들은 반드시 숙지하여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① 이직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의 계속 고용여부를 판단하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감원여부를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 고용유지조치기간이라 함은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3개월 동안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로 계획 신고한 경우 고용유지조치기간은 계획 신고된 3개월을 말합니다.
 - ② 계획 신고된 내용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변경계획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③ ④계획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정리해고, 사업주 권유, 희망·명예퇴직 등 당해사업장 피보험자의 인위적인 감원이 있는 경우와 ⑤ 해고가 예고된 자 및 경영상 이유에 따라 근로자로부터 근로계약 해지청약을 받아 근로계약 해지를 공고 또는 문서로 통지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고용보협법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고용유지조치기간중 신규채용이 발생할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④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감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감원한 근로자를 자진퇴사로 이직처리한 후 추후 감원으로 이직사유를 변경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 ⑤ 지급되지 않은 체불임금이 있음에도 이를 포함하여 지원받거나 고용유지조치 이전의 임금(변동급 제외)보다 상향 지급하는 경우 등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원금 수급자가 되어 기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하고 추가징수 등의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⑥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간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부정수급액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합니다.
 - ⑦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의 대상자 명단 비교란에 고용유지조치대상자 연락처(휴대전화번호)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 개인 휴대전화 번호 수집은 휴직·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사실과 다르게 실시하거나 허위로 실시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요청드리오니 고용유지조치대상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을 수 있음을 사전 직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⑧ 휴업중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상 의무적 부여), 하계휴가 및 경조휴가의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⑨ 휴직중 휴직자가 당해 회사의 퇴직 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⑩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휴직자가 잠시라도 당해 사업장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⑪ 기타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고용유지지원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 .

사업장명	[법인의 경우 법인 도장 필수](직인 또는 인감)	사업주 또는 안내받은 자	(서명)
------	------------------------------------	------------------	------

고용유지현황 및 매출액 대비표

(년 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

가. 매출액 대비표(휴업실시월의 당월까지 기재)

(단위 : 천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월평균
2019년														
2020년														
비고														

나. 연장+휴일근로시간현황(휴업실시월의 현황 기재)

근로자성명	연장+휴일근로시간 총계	연장+휴일근로수당 합계
합 계		

☞ 휴업실시월동안 전체 피보험자가 실시한 “연장+휴일근로시간의 합”을 기재하여 주시고, 당해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휴일근로시간)÷8시간≫의 합이 휴업연일수(근로시간단축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함

사업장명:

(인)

■ 복 직 명 령 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가 종료되었기에 아래의 유급휴직자 전원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에 복직을 명함.

-

연번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부서명	직책	유급휴직기간	복직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끝.

년 월 일

사업장명 :

대표:

(인)

■ 노 사 합 의 서(예시)

1.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 실시
2. 유급액은 (통상임금) (100) % 지급
3. 휴직기간 : 2020.3.27. ~ 6.30.(총 96일)
4. 유급휴직 종료 후 회사에 다시 복귀한다.

회사 경영상 사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위와 같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고자 노사가 합의합니다.

2020년 3월 3일

사업장명: (주)소프트빛나라

사업주: 김석동(인)

근로자대표: 한보미(인)

※ 이번 실시하는 유급휴직과 관련하여 (한보미)를(을) 근로자 대표로 선출하는 데
에 동의합니다.

연번	이름	서명	연번	이름	서명	연번	이름	서명
1	김춘배	(본인서명)	6		11		16	
2	홍길동	(본인서명)	7		12		17	
3			8		13		18	
4			9		14		19	
5			10		15		20	

(또는 근로자 대표 없이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와 직접 협의-휴직 대상자 반드시 포함)

- ※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회의록, 회의개최 시행공문 등 성실한 협의를 거쳤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대신 제출(일방적인 계획통보가 아닌 협의의 내용을 제시하고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야 함)
-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와 협의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동의서(예시)

소 속 : (주)소프트빛나라

근 로 자 : 김춘배

주민번호 : 901231-1*****

주 소 : 경기도 xx시 한빛13로

상기 근로자 본인은 (사업장명: (주)소프트빛나라)에서 실시하는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에 대한 아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 래 -

1.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 실시
2. 유급액은 (통상임금)(100)% 지급
3. 기간 :
4. 유급휴직 종료 후 회사에 다시 복귀한다.

2020년 3월 3일

동의자: 김춘배(인)

사업장명: (주)소프트빛나라 (직인)[법인도장 필수]

■ 유 급 휴 직 명 령 서 (예 시)

2020년 3월 2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휴직이 끝난후에는 즉시 사업장에 복직하도록 함.

연번	유급휴직자인적사항		부서명	직책	비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1	김춘배	901231-1*****	경영지원3팀	사원	
2	홍길동	930513-1*****	영업2팀	사원	
3					
4					
5					
6					
7					
8					

끝.

2020년 3월 3일

사업장명 : (주)소프트빛나라

대 표 : 장 길 산 (인)
[법인도장 필수]

사업주 확인서

☐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분(예, 아니오)에 진하게 체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사항	예	아니오
○ 고용유지조치기간(휴업·휴직) 중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없습니다.		
○ 고용유지조치기간(휴업·휴직)과 이후 1개월간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 고용유지조치기간(휴업·휴업) 중 출근하여 일을 한 직원이 없습니다. (고용유지조치 대상에 한함)		
○ 지원금 지급 대상에 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 근로자는 없습니다.		
○ 지원금 지급 대상에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자,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자는 없습니다.		
○ 근로자에게 휴업·휴직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100이상 또는 통상임금을 지급했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의 인건비를 지원 받지 않았습니다.		
○ 코로나19 피해기업으로 제출한 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 추가징수, 1년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장

귀하